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9

발의연월일: 2024. 6. 10.

발 의 자:최민희·조인철·박민규

전용기 · 박해철 · 서영교

박수현 · 임미애 · 황정아

박희승 • 강선우 • 송재봉

윤건영 • 이연희 • 허 영

이성윤 • 이수진 • 한민수

진성준 • 문진석 • 모경종

박균택 • 백승아 • 이병진

천준호 • 김 현 • 김문수

정성호 · 이광희 · 강유정

김성환 · 김태년 · 김영배

이정헌 · 정진욱 · 양부남

허성무 · 이해민 의원

(38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하고 있으나 제한된 소수의 신청인만 회의장 또는 별도의 공간에서 방청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음.

그런 상황에서 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방통위는 대통령이지명한 2인으로만 운영되며, 위원회 회의는 대통령 지명 2인의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의사진행으로 일관된 요식행위로 전략되었고,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YTN 민영화 등 방송장악을 목적으로 한중요한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렸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추천한 다수의 위원들에 의해 일방통행식 회의가 진행됨은 물론 소수 위원의 발언기회까지 제한하는 등 무법에 가까운 방식으로 회의가 이뤄지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실상을 국민들이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회의 공개의 취지를 되살리고자 함. 특히 최근에는 회의 속기록이 사라지는 초유의 사건까지벌어져, 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함으로써 속기록이 사라져 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안 제13조제6항 및 제22조제6항ㆍ제7항 신설).

법률 제 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는 공개되는 회의를 누구든지 방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⑦ 심의위원회는 공개되는 회의를 누구든지 방청할 수 있도록 인터 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회의) ① ~ ⑤ (생 략)	제13조(회의) ① ~ ⑤ (현행과 같
	<u>야</u>)
<u> <신 설></u>	⑥ 위원회는 공개되는 회의를
	누구든지 방청할 수 있도록 인
	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u>⑥</u> ·⑦ (생 략)	<u>⑦</u> ⋅ <u>⑧</u>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제22조(회의 등) ① ~ ⑤ (생 략)	제22조(회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규
	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u><신 설></u>	⑦ 심의위원회는 공개되는 회의
	를 누구든지 방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u>공개하여야 한다.</u>
<u>⑥</u> · <u>⑦</u> (생 략)	<u>⑧</u> ・ <u>⑨</u>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